

#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7. 5.

발의의원 : 이진환, 조성대, 김상수,  
한근수, 박윤옥, 이수련,  
한송연, 손정자, 김동훈,  
이정애, 이경숙, 박경원,  
원주영, 김지훈(민)

### 1. 제안 이유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 견인료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견인을 통하여 시민의 보행 편의를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산정기준을 신설 규정함.

### 2. 주요 내용

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(안 별표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견인료 소요비용 산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견인료      | 보관료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승용자동차          | 경형                | 35,000원  | 1일 차량보관료는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,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|
|                | 소형                | 4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중형                | 45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대형                | 50,000원  |  |
| 승합자동차          | 경형                | 4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소형                | 5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중형                | 6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대형                | 70,000원  |  |
| 개인형 이동장치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,000원  |  |
| 화물자동차<br>특수자동차 | 배기량 1000cc<br>미만  | 4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3.5톤 이하           | 6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3.5톤 초과<br>10톤 미만 | 80,000원  |  |
|                | 10톤 이상            | 140,000원 |  |

※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름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「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 별표 내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비용 신설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
- 견인료 소요 비용 산정기준(개정안)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20,000원이며, 매년 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 소요 예상 비용은 2,000,000원으로 매년 견인대행료 본예산 5,000,000원 미만임

### 4. 작성자

- 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서동진

- 「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」  
제3조(소요비용) ①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1.12.22, 2013.01.07>

[별표] <개정 2013.01.07>

견인료 소요비용 산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1. 견인요금

(단위: 원)

| 구분<br>대상차량         | 견인료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기본요금(편도 5km까지) | 추가요금(매 km증가 시) |
| 2.5톤 미만            | 30,000         | 1,000          |
| 2.5톤 이상<br>6.5톤 미만 | 40,000         | 1,400          |
| 6.5톤 이상            | 60,000         | 2,500          |

## 2. 보관요금표

- 1일 차량보관료는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되,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### 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8. 27.>

#### 자동차의 종류(제2조관련)

##### 1. 규모별 세부기준

| 종 류       | 경 형  |   | 소 형   | 중 형  | 대 형  |
|-----------|--|---|---|--|--|
|           | 초 소 형  | 일 반 형   |   |  |  |
| 승용<br>자동차 |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것<br>배기량이 250cc 이상인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인 것<br>길이 3.6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5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,000cc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6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,600cc 미만이고, 길이 4.7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7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기량이 1,600cc 이상 2,000cc 미만인 것<br>길이 3.6미터 이상 3.9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7미터 이상 1.9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상 2.2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2,000cc 이상인 것<br>길이 3.9미터 이상인 것<br>너비 1.9미터 이상인 것<br>높이 2.2미터 이상인 것 |
| 승합<br>자동차 | 배기량이 1,000cc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6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 |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<br>길이 4.7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7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것<br>길이 3.9미터 이상 3.9미터 이하인 것<br>너비 1.7미터 이상 1.9미터 이하인 것<br>높이 2.0미터 이상 2.2미터 이하인 것 |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것<br>길이 3.9미터 이상인 것<br>너비 1.9미터 이상인 것<br>높이 2.2미터 이상인 것  |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인 것<br>길이 3.9미터 이상인 것<br>너비 1.9미터 이상인 것<br>높이 2.2미터 이상인 것    |

|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만인 것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물<br>자동차 | 배기량이 250시시 (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) 이하이고, 길이 3.6미터·너비 1.5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배기량이 1,000시시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·너비 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|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,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것    |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,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       |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   |
| 특수<br>자동차 | 배기량이 1,000시시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·너비 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|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|
| 이륜<br>자동차 | 배기량이 50시시 미만(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)인 것   |   |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인 것 |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)인 것 | 배기량이 260시시 (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) 를 초과하는 것 |

2. 유형별 세부기준

| 종류        | 유형별    | 세부기준   |
|-----------|--------|--|
| 승용<br>자동차 | 일반형    |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,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|
|           | 승용겸화물형 |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다목적형   |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|           | 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 타 형     |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승 합<br>자 동 차 | 일 반 형     |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|
|              | 특 수 형     | 특정한 용도(장의·헌혈·구급·보도·캠핑 등)를 가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 물<br>자 동 차 | 일 반 형     |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 |
|              | 덤 프 형     |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밴 형       |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|
|              | 특 수 용 도 형 |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,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|
| 특 수<br>자 동 차 | 견 인 형     |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|
|              | 구 난 형     | 고장·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·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특 수 용 도 형 |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 른<br>자 동 차 | 일 반 형     |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특 수 형     | 경주·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 타 형     |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비고

1.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
가. 화물자동차 :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(소형·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.5제곱미터 이상,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)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

- 1)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, 유류·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(구조·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)
- 2)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(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)보다 넓은 자동차
- 3)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

나.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"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"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- 1)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
- 2)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, 조향장치의 조작방식,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
- 3)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

2.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.

가.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·너비·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,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·너비·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.

나.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.

다.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(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)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(負荷, load)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.